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
알림서비스 운영지원
민간위탁 동의안

구 미 시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3. . .
제 출 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○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필요

○ 대상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처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

나. 추진근거

1) 노인복지법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
2)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
3) 보건복지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

다. 위탁사무 :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전반

1) 지원 대상자 요건 심사·선정·관리, 댁내 장비 설치·관리

2) 응급관리요원 채용·관리, 응급사항 발생 시 현장 확인 등

라. 위탁기간 :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간 * 2024. 1. ~ 2025. 12.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바. 수행기관 현황 * 2023년 기준

기관명	소재지	서비스 대상자	응급관리요원	비 고
은빛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송원서로8길 57, 3층	769명	2명	23년 내 목표인원 : 1,000명

사. 소요예산 : 연 187,171천원 정도(균 47%, 도 14%, 시 39%)

3. 부서의견

가.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탁 추진이 적정함

나.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는 1개 기관에서 응급관리요원 2명이 769명의(23년 기준) 대상자 댁내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추진근거 :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,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※ 보건복지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기관 위탁, 대상자 선정, 서비스 제공, 응급관리요원 관리 , 댁내장비 설치·관리,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: 『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』 심의 결과 “적정”

관계법령

□「노인복지법」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24.>

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7. 10. 24.>

[본조신설 2007. 8. 3.]

□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2.11.9.>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11.9.>

[제목개정 2022.11.9.]

독거노인·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댁내 장비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, 유지·보수 등 관리비, 응급관리요원 2명 인력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국·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내시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비를 산정 하였으며, 연 187,171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나. 2차 년도부터 인건비, 물가 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3% 인상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소계(a)	187,171	192,786	198,569	204,526	210,661	993,713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(균특)	88,106	90,609	93,327	96,127	99,011	467,180
도 비	26,432	26,990	27,800	28,634	29,493	139,349
시 비	72,633	75,186	77,442	79,765	82,157	387,183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187,171	192,786	198,569	204,526	210,661	993,713

5. 부대의견 : 국·도비 내시, 배정 인원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김현정(054-480-515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금액	내 용	비 고
합 계	**187,717**		
인건비	65,267.5	- 급여 : 2,010,580원×2명×12개월=48,253,920원 - 퇴직금 : 2,010,000원×2명=4,020,000원 - 사회보험료 : 2,696,790원×2명=5,393,580원 - 교통비 : 200,000원×2명×12개월=4,800,000원 - 통신비 : 100,000원×2명×12개월=2,400,000원 - 명절수당 : 100,000원×2명×2회=400,000원	
장비유지 보수비	114,225	- 20년~21년 구입 장비 임대료 : 10,000원×769대×12월=92,280,000원 - 23년 추가 구입 장비임대료 : 10,000원×231대×9.5월=21,945,000원	23년 내 1,000대 설치 목표
기관 운영비	7,678.5	- 사무용품 : 80,000원×3회=240,000원 - 복리후생비 : 300,000원×2명×12개월=7,200,000원 - 교육 참가비 : 84,250원×2명×1회=168,500원 - 배상·재정보험 : 35,000원×2명=70,000원	

※ 인건비, 장비 유지 보수비 등 산출내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편성

소 관 부 서		노인장애인과
입 안 자	과 장	권 혁 성
	팀 장	강 영 도
	담 당 자	김 현 정 (480-5154)